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세계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와 함께 매년 한미관계 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지난 4년동안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사회자가 본인의 과거 직책리스트를 전부 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여러 직책에 있었으며 만약 그것들을 모두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적어도 몇 차례 해고를 당하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자리를 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 중 하나는 현재는 휴직중이지만 제네바에 있는 WTO의 자문관이었으며 거기에서 본인은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의제들에 관한 일을 하였다. 싱가포르회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실무반을 창설토록 합의하였는데 하나는 무역과 경쟁정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역과 투자 정책이다. 지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역과 투자 실무반이 2년 이내에 WTO의 다자간 규정들이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까지 확대하거나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OECD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는 점이다.

사실 이미 OECD는 이러한 규정들의 협상과정에 있다. 이것이 바로 자주 언급되고 한국언론에서도 수주동안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다. 양 실무반은 현재 무역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세장벽과 쿠타 및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비관세장벽등의 정상적 무역장벽을 확실히 감축함으로서 국제무역 환경에서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이것들의 감축과 함께 국제상무관계에는 전체적으로 국경이외에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는 규제를 통

해서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정부제한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관리들이 국제상무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수출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정책이며 국제무역규범 특히 국가협정인 GATT 규정 제3조(GATT Article III)에 위반되고 또는 제23조 1.b항(Article XXIII.1.b)의 소위 비위반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GATT와 무역법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1947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새로운 것은 UR협상의 종결로 분쟁조정절차에서 매우 획기적 변화가 있으며 그리고 분쟁조정 과정의 결과는 차별정책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는 비우호적이고 불만을 제기한 국가에는 훨씬 더 우호적이 되었다. 이것이 초래한 변화는 지대하다. 저는 미국과 일본간 자동차부품에 대한 분쟁을 예로 들고자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이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에 대하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일본의 하시모토 통상장관은 캔터(Kantor)대표에게 일본은 301조가 WTO 규정에 반한다는 사실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Kantor 대표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후 301조 발동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301조는 적용되지 않는, 다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는 WTO에 제소한다는 하시모토의 위협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에서 패소할 것이며 301조를 폐기하라는 WTO의 권고에 따르거나 또는 미국으로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WTO에 대항해야 하는 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미국은 11번이나 WTO분쟁에서 패소했으며 매번 그 결정에 따랐다. 새로운 분쟁조정절차와 법규로 WTO는 국제상행위를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수적으로 저는 한국정부가, WTO가 국제상행위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갖는 비전통적 국내정책의 철폐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외국기업의 접근을 가로막는 민간기업의 수단과 이행이다. GATT 규정 제23조(Article XXIII)의 다른 조항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Article XXIII.1.c.) 실제로 1960년 GATT 실무위원회는 GATT 규정이 민간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여러 이유들을 언

급했다. 현재의 법규에서 WTO규정을 정부수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간수단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무역과 경쟁정책 실무반은 여러 여건을 관찰하여 이러한 법규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분야에서 앞으로 WTO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산업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그 산업을 민감하게 만드는 고유의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은 기업이 퇴출하고자 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진입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는 산업이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판매할 것인가? 어디를 가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하나이다. 그러한 산업은 고유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시장에서건 독점이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나 WTO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국제적 산업이 전 세계시장에 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자연 독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 중에는 대형 상업 비행기시장이 있다. Boeing사는 상업용 비행기의 제3위 업체이면서 취약한 공급자인 MacDonnell-Douglas사와 통합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는 미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Airbus사의 경쟁적 위치가 통합으로 받게되는 영향을 우려하는 유럽에서 제기되었다. 아마도 항공기 산업은 경쟁정책 측면에서 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통합을 생각한다면 산업체들 중에서 가장 범세계적 산업이다. 통합된 회사가 미국에 본부를 두는 회사이긴 하지만 세계시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통합문제의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 차세대 대형 상업용 비행기 개발비용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오직 한 회사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Boeing사와 Airbus사가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별한 통합을 누가 규제하고 검토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무역정책전문가 사이에는 다자간 WTO규정이 소위 “초국경적”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가 되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합의가 덜된 점은 세계의 주요 정부지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차이로 인한 것이다.

경쟁에 관한 미국정부의 일반적 철학은 경쟁을 더 할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지면서 기술혁신이 활발해 진다.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경쟁이란 통제되어야 하며 과다경쟁은 혼란과 파멸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최근 외국인투자에 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자. 우리는 중국이 산업내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그 중간이다. 그들은 경쟁은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서 경쟁이 바람직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과거에 경쟁을 제한하던 한국도 이제는 한때 제한되었던 부문에서 조심스럽게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하여 진입을 극심하게 제한하던 것에서 조심스럽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정책이 “경쟁을 더 할수록 바람직하다”는 미국의 정도는 아니지만 과다경쟁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견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본다. 그런면에서 한국은 중간쯤으로 유럽식 견해와 비슷하다.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MAI는 미국의 주도로 OECD에서 시작되었다. 기본목표는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MAI는 시장에서 경쟁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며 그리고 보다 많은 시장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정책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이것이 적어도 MAI에 참여하는 미국의 기본적 운영철학이며 그리고 미국정부가 이 특별한 움직임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MAI 자체는 많은 조항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네 가지 기본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협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MAI는 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이며, 여기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경영권을 갖는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MAI에서 다른 어떤 투자들

도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수익성 투자와 무형적 투자는 어떤가? 어디까지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추세는 MAI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취급토록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조항들이며 특히 여기에는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국유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절차에 따르면서 적절한 보상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국유화는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민영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본 자동차회사중에 낫산이 있는데 이 낫산이 미국자산을 수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낫산은 1930년대 일본 군사정부가 국유화한 포드자동차의 일본자회사가 그 뿐리이다. 왜 1940년대 전쟁 후에 포드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았는가? 만일 MAI가 채택되면 환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적대국 투자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국유화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며 또는 전쟁 후 자산을 돌려준다는 조건하에서 국유화가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여하간 낫산과 일본전기(NEC)를 포함한 다른 여러 일본내 회사들도 미국과 다른 외국투자자들의 자산을 국유화한 것이다. 미국 자신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Dupont사는 1916-17년 전쟁 중 독일자산을 국유화한 것이 그 뿐리이다. GAF라는 미국회사는 환원을 규정한 미국법에 따라서 제2차 대전 중 국유화한 회사라고 미국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BASF라는 독일회사의 자산이다. 그것은 1980년대에 독일회사로 환원되었다. 만일 MAI가 효력을 발휘하면 GAF와 같은 처리가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환원이 50년 전부터 효력이 있었다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MAI의 핵심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의무에 있다. 여기에는 설립권,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 보장, 핵심 자리에 자국인 배치, 그리고 투자대상국에 요구하는 많은 다른 의무들이 포함된다. 이제 MAI에 참여하는 각국은 이 의무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의무 중 일정한 유보 또는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주된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이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대출정책에서 유사한 성격의 국내기업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

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는 국적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후자의 예로는, 만약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면서 역사적 이유로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MAI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MAI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 국가가 MAI 참여국이라면 MAI 아래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차별할 수 없다.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리협상에서 내년까지 MAI의 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많은 결의문들이 등록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40개 이상의 결의문에 등록했다. 평균적으로 국가당 11-12 개로 등록했다. 26개를 등록한 멕시코가 한국 다음으로 많이 등록했다. 한국은 특이한 처지이다. 한국도 그 등록 결의문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협상국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MAI의 네 번째 조항은 분쟁해결에 관한 것이다. MAI에서 누가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인가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WTO 절차와 같이 정부만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다. 대안으로 개별투자자들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것이 소위 투자자 대 국가 분쟁절차이다. 이러한 절차가 WTO는 아니지만 NAFTA에 이미 존재한다. 본인이 아는 한 NAFTA가 그러한 조항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제협정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OECD내에서는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 MAI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협상국들과 동떨어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국인 대우에 대한 국가별 유보 건수이다. 다른 하나는 MAI 조항으로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MAI에서의 한국 입장이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내정책 및 경제개혁과 완전히 일관성이 있는가? 한국은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 참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색하고 있다. 즉, 능력이 없는 한국기업들의 기술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전을 위하여 외국투자를 허용한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은 기술이전과는 별도로 기술파급 효과를 모색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시장에서 보다 더 경쟁적인 것을 원한다. 또 한국은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국내투자수요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국내저축의 부족분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보충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투자를 국내성장율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의 목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6·7% 성장은 서구의 관점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다. 한국인들은 6% 이하를 불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것이 불황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불황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목표들과 MAI에서 한국의 협상태도 사이에 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찰자 입장에서 본인은 협상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일은 가능한 한 적게 양보하면서 적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개혁과 정책개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국제협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 국제협상을 저항해야만 하는 일련의 외국요구들이 아니라 언젠가 해야 할 정책개혁을 즐거이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제협상은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 개혁을 이행하는 이유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용하여 때로는 국내적 반대 특히 정치적 반대에 맞설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축하할 일이다. 정치적 반대는 개혁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MAI에 참여한 전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개혁의 시기에 한국이 OECD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보조치들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려는 생각을 줄이고 오히려 어떤 유보조치들을 철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자신들이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경제적 목표에 일치하도록 국제적 의무 아래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MAI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는 협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내 경제적 개혁을 기꺼이 이행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MAI 뿐 아니라 WTO의 의무에 있어서도 국제적 참여에 요구되는 국내 경제적 변화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WTO 의무와 미래 MAI 의무를 행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 변화가 급속하게

발생하는 국가이며 이 의무들과 이미 한국이 실천 기회를 놓친 개혁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일치하는 국가이다.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를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조화시키려는 도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토 론

질문 이것은 MAI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강연 초기에 당신은 미·일간 자동차부품에 관한 분쟁을 언급하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소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만일 일본내의 시장이 경쟁적이 아니고 외국경쟁업체에 차별적이라면, 왜 미국은 먼저 이 분쟁을 301조 대신 WTO에 제소하지 않았는가?

답변 매우 좋은 질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양국간 대결을 즐기는 Micky Kantor 자신의 성격이다. 그의 성격에는 이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설픈 관찰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들은 다소 약한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현재는 그것이 약한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줄어들었다. GATT 체약국들이 채택하여, 민간업체가 수입장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불만을 기초로 해서는 어떠한 GATT 규정도 이용할 수 없다는, 무역규범의 일부가 된 1960년 GATT 실무팀의 결정이 있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었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만일 수도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국내 법정에서는 심의 가능할 수 있다. WTO규정의 이와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소 하는것이 성공확률이 높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이 비합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WTO 규정이 오히려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수직적 제한이 수출을 막는 이러한 종류의 분쟁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하여 WTO가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역과 경쟁 실무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질문 MAI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들간에 어떤 구체적인 반응이 있으며 그리고 MAI가 어떻게 멕시코와 한국과 같이 OECD의 저소득국가들에의 진입을 쉽게 만들 것인가?

답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유보조치들과 예외조치를 유지하는가에 상당히 의존하며 그리고 지적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MAI의 정신은 분명히 다국적기업의 시장참여를 쉽게 만드는 방향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구체적인 대답은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유보조치들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인 대답은 참여를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질문

- 1) 환경과 노동문제가 미국이 MAI를 연기한 이유이다. 당신은 MAI 가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고서도 달성될 것을 믿는가?
- 2) MAI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 모두에 미칠 것인가?

답변 개인적으로는 노동과 환경문제가 MAI에 속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들을 주장하기에는 MAI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지역구에서는 미국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협상에 노동과 환경문제를 넣으려 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지금처럼 이러한 압력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본다.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협상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에서도 MAI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국내 정치적 반대가 있다. 미국정부는 이 문제들을 일정 수준으로 협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단체들의 반대를 누그러지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인지는 의문이다.

한국경제의 측면에서 본인은 한국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MAI를 받아들이고 MAI가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미 한국이 모색하고 있는 기술이전과 제한된 부문에서 보다 많은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은 건설적인 정책변화의 길을 열게 되어 보다 많은 인수·합병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제가 한국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질문 MAI도 결국은 WTO에 속해야 하는가?

답변 저는 아직도 “예”라고 생각한다. 작년 가을 KIEP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이유들이 아직도 유효하다. MAI가 WTO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는, 그 협정이 소위 “달성해야 할 고도의 기준”을 구현하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다. 개인적으로는 WTO가 복수국가간 협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복수국가간 협정이란 WTO의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이 협상이 WTO가 아니고 OECD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은 OECD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결과로는 OECD 협정이 보다 온전한 상태로 WTO체제 속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IEP 세미나 이후 7개월이 된 현재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는 OECD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WTO에도 실무반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실무반은 기본작업도 시작하지 못했다. 따라서 WTO를 통한 방법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도 그것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 문제는 앞으로 MAI가 타결되었을 때 이것이 WTO로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그 대답은 “예”이다.

질문 외국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라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만일 OECD가 NAFTA 모형을, NAFTA 규정 11.b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면 국내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제소하고 그리고 한국도 이미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일부로 자리잡은 투자분쟁 조정을 위한 국제본부(ICSID)의 현행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법정에서 심의하는 것이다. NAFTA 절차는 투자자가 단독으로 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약간 발전한 것이다. 세계은행내의 ICSID에 설립된 법정은, 만일 투자대상국이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적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해당국가는 법정의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국내법을 바꿀 수도 또는 바꾸지 않을 수도 있으며 NAFTA 절차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조건부 대답이다. 즉, 만약 MAI가 NAFTA 절차를 채택한다면(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유일한 모형이다) 그리고 그 모형이 채택된다면 그 대답은 “아니요”이다.

질문 기술이전에 대한 MAI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MAI는 기술이전을 금지하기 보다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